|  |  |  |
| --- | --- | --- |
| **인터넷 판매 제3자 플랫폼 거래규칙****제정 프로세스 규정（시범）**상무부령2014년 제7호“인터넷 판매 제3자 플랫폼 거래규칙 제정 프로세스 규정（시범）”은 2014년 12월 1일 상무부 제32차 업무회의에서 이미 심사를 거쳐 통과하였으며 2015년 4월 1일부터 실행한다. 부장 가우후청(高虎城)　　2014년 12월 24일**제1조** 인터넷 판매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고 제3자 플랫폼을 통한 인터넷 판매에서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공공 정보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하여 관련 법률 법규에 근거하여 본 규정을 제정한다.**제2조** 인터넷 판매 제3자 플랫폼 경영업체가 거래규칙을 제정, 수정, 실행 시 본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제3조** 본 규정에서 말하는 거래규칙은 플랫폼 서비스를 사용하는 불특정 주체에게 적용되고 사회 공공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인터넷 판매 제3자 플랫폼 경영업체가 제정, 수정, 실행하는 규칙을 뜻한다. 본 규정에서 말하는 인터넷 판매 제3자 플랫폼 경영업체는 기타 업체에 인터넷 판매 가상 스토어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며 또한 중국 경내에서 운영하고 있는 법인 및 조직을 뜻한다. 본 규정에서 말하는 인터넷 판매는 인터넷을 통해 소비자에게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를 뜻한다. **제4조** 인터넷 판매 제3자 플랫폼 거래규칙의 제정, 수정, 실행은 반드시 공개, 공평, 공정의 원칙을 준수해야 하고 법률, 법규를 준수해야 하며 사회 도덕을 존중하고 사회경제 질서를 혼란에 빠뜨리거나 사회공공이익에 손해를 주어서는 아니 된다.**제5조** 상무부는 인터넷 판매 제3자 플랫폼 거래규칙 등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책임지고 성, 자치구, 직할시 상무주관부서(이하 성급 상무주관부서로 약칭)는 인터넷 판매 제3자 플랫폼 거래규칙 등록 등 일반 운영을 책임진다. **제6조** 인터넷 판매 제3자 경영업체가 아래 거래 규칙을 제정, 수정, 실행 시 반드시 본 규정에 따라 공시 및 등록해야 한다. (1）기본 규칙，인터넷 판매업체와 소비자가 제3자 플랫폼 등록 관련 규칙 및 거래 성립, 유효성 및 의무 이행 관련 기본 규칙(2） 책임 및 리스크 분담 규칙, 인터넷 판매 제3자 경영업체가 제정한 인터넷 판매업체 및 소비자가 져야 할 민사 책임 혹은 책임 면제 관련 규칙 및 리스크 분담 규칙(3）지적재산권 보호 규칙, 지적재산권 보호 및 모조품 방지 관련 규칙(4）신용평가 규칙, 인터넷 판매 제3자 경영업체가 거래 쌍방에게 제공하는 신용평가 서비스 및 거래 쌍방의 신용현황을 수집, 기록, 공표하는 규칙(5） 소비자 권익 보호 규칙, 소비자의 “알 권리”, “합리적으로 반품할 권리”, 배상 청구 등 합법적 권리를 보호하고 소비자 개인 정보 및 거래 기록을 보호하는 규칙(6）정보 공시 규칙，인터넷 판매 제3자 경영업체가 인터넷 판매업체로 하여금 실명제 등록, 법적 영업자격을 심사하는 규칙(7） 불법 정보 방지 규칙, 인터넷 판매 제3자 경영업체가 국가 법률법규에 위배되는 제품 및 서비스 정보 또는 인터넷 광고를 등록하는 행위를 제지하는 규칙(8） 거래 분쟁 해결 규칙，인터넷 판매 제3자 경영업체가 인터넷 판매업체 및 소비자 간의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 및 규칙(9）거래규칙 적용 관련 규정, 거래규칙 적용 대상, 범위 및 기한 등 규정(10）거래 규칙 수정 규정, 거래 규칙 변경, 수정 절차 및 방식 관련 규정 (11）기타 필요한 거래 규칙 및 규칙 관련한 조치**제7조** 인터넷 판매 제3자 경영업체는 거래 규칙 제정 또는 수정 시 반드시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서 공개 의견 수렴을 진행해야 하며 합리적인 조치를 통해 거래규칙 관련 이익관계자들이 제때에 관련 내용을 숙지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수렴한 의견에 대해 합리적인 방식으로 답변하고 의견 수렴 시간은 7일 이상이어야 한다. **제8조** 아래에 상황에 해당하는 거래규칙은 공개 의견 수렴을 하지 않아도 된다. (1）법률 법규 요구에 부합하기 위하여 수정하는 거래 규칙(2）성급 인민정부 관련 부서의 요구에 따라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긴급 처리 조치를 취하는 거래 규칙**제9조** 인터넷 판매 제3자 경영업체는 거래 규칙 실시 7일전에 홈페이지에서 눈에 띄이는 위치에 거래규칙을 공개해야 한다. 상업기밀은 제외한다. **제10조** 인터넷 판매 제3자 경영업체가 거래규칙을 제정, 수정, 실행하는 것이 인터넷 판매업체 및 소비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 합리적인 과도 기간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1조** 인터넷 판매 제3자 경영업체는 합리적인 조치를 통해 이익 관계자들이 거래규칙 관련 내용을 전면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인터넷 판매 제3자 경영업체 또는 이익관계자의 책임 면제 또는 책임 제한 관련 내용을 주의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인터넷 판매 제3자 경영업체는 이익관계자의 요구에 따라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합리적인 방식으로 거래규칙에 대해 설명해야 한다. **제12조** 인터넷 판매 제3자 경영업체는 거래규칙을 실행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인터넷 판매 제3자 플랫폼 거래규칙 등록 시스템에 본 규정에서 요구한 거래규칙, 수렴한 의견 및 의견에 대한 답변 현황 등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제13조** 인터넷 판매 제3자 경영업체는 거래 규칙 수정 시 본 규정 12조의 요구에 따라 수정한 내용을 다시 등록해야 한다. **제14조** 상무주관부서는 인터넷 판매 제3자 플랫폼 거래규칙 등록 시스템을 통해 기등록한 거래규칙의 무료 조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제15조** 그 어떤 조직 및 개인은 인터넷 판매 제3자 플랫폼 거래규칙 등록 시스템을 통해 인터넷 판매 제3자 경영업체 소재지 성급 상무주관부서에 본 규정을 위반하는 거래규칙을 신고할 수 있다. 성급 상무주관부서는 신고 내용 중 해당 부서 직책범위에 속하는 내용은 법에 따라 제때에 처리해야 하며 해당 부서 직책범위에 속하지 않는 내용은 관련 부서에 전달해야 한다. **제16조** 정부는 산업조직에서 산업 규범화 관련 활동을 하는 것을 격려하고 기등록한 거래규칙에 대해 의견을 제출하고 인터넷 판매 제3자 경영업체와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제3자 플랫폼 거래규칙의 표준화 및 규범화를 추진한다.**제17조** 인터넷 판매 제3자 경영업체가 아래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한 경우 소재지 성급 상무주관부서는 해당 업체에 행정지도 건의서를 제출할 수 있다.(1）본 규정 제11조 규정에 따라 이익관계자의 책임 면제 또는 책임 제한 관련 내용을 주의하도록 조치하지 않은 경우(2）본 규정에 따라 거래규칙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3）등록한 정보가 불충분하거나 진실하지 아니한 경우 **제18조** 인터넷 판매 제3자 경영업체가 본 규정에 따라 거래규칙을 제정, 수정, 실행하지 아니 하였을 경우, 소재지 성급 상무주관부서는 기한부 시정 조치를 취하며 시정하지 않을 경우 경고를 하고 이를 사회에 공개한다.**제19조** 인터넷 판매 제3자 경영업체가 제정, 수정, 실행한 거래규칙이 사회공공이익에 손해를 주고 범죄를 구성하였을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한다. **제20조** 인터넷 판매 제3자 경영업체가 본 규정 제12조, 제13조를 위반하여 등록하지 않거나 가짜 등록 정보를 제출하였을 경우, 소재지 성급 상무주관부서는 기한부 시정 조치를 취하며 시정하지 않을 경우 경고를 하고 이를 사회에 공개한다. **제21조** 상무 주관부서 및 직원이 본 규정을 위반하고 해당 직책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에 따라 처벌하며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한다. **제22조** 본 규정이 실행되기 이전에 이미 실시한 거래규칙에 대해 인터넷 판매 제3자 경영업체는 본 규정이 실행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제23조** 본 규정은 2015년 4월 1일부터 실행한다. |  | **网络零售第三方平台交易规则制定****程序规定（试行）**商务部令2014年第7号《网络零售第三方平台交易规则制定程序规定（试行）》已经2014年12月1日商务部第32次部务会议审议通过，现予发布，自2015年4月1日起施行。　　部长 高虎城2014年12月24日　　**第一条** 为了促进网络零售的健康发展，保护依托第三方平台网络零售活动中各主体的合法权益，维护公共利益，加强公共信息服务，根据有关法律法规，制定本规定。　　**第二条** 网络零售第三方平台经营者制定、修改、实施交易规则应当遵守本规定。　　**第三条** 本规定所称交易规则，是指网络零售第三方平台经营者制定、修改、实施的适用于使用平台服务的不特定主体、涉及社会公共利益的公开规则。　　本规定所称网络零售第三方平台经营者，是指为其他经营者进行网络零售提供虚拟经营场所及相关服务，且在中华人民共和国境内经营的法人及其他组织。　　本规定所称网络零售，是指以互联网为媒介向消费者销售商品或提供经营性服务的行为。　　**第四条** 网络零售第三方平台交易规则的制定、修改、实施应当遵循公开、公平、公正的原则，遵守法律、行政法规，尊重社会公德，不得扰乱社会经济秩序，损害社会公共利益。　　**第五条** 商务部负责建设网络零售第三方平台交易规则备案系统，省、自治区、直辖市商务主管部门（以下称省级商务主管部门）负责网络零售第三方平台交易规则备案等日常管理。　　**第六条** 网络零售第三方平台经营者制定、修改、实施的下列交易规则应按照本规定公示并备案：　　（一） 基本规则，指网络零售经营者和消费者在第三方平台注册的规则及关于交易成立、有效性和履行的基础性规则。　　（二）责任及风险分担规则，指网络零售第三方平台经营者对网络零售经营者和消费者承担民事责任或者免除责任的规则及风险分担的规则。　　（三）知识产权保护规则，指保护知识产权以及防止假冒伪劣商品的规则。　　（四）信用评价规则，指网络零售第三方平台经营者为交易双方提供信用评价服务，以及收集、记录、披露交易双方信用情况的规则。　　（五）消费者权益保护规则，指保护消费者知情权、合理退货权、获得赔偿权等合法权益，保护消费者个人信息及交易记录的规则。　　（六）信息披露规则，指网络零售第三方平台经营者对网络零售经营者进行实名登记、审核其法定营业资格的规则。　　（七）防范和制止违法信息规则，指网络零售第三方平台经营者防范和制止在其平台上发布违反国家法律法规规定的商品和服务信息、网络广告等规则。　　（八）交易纠纷解决规则，指网络零售第三方平台经营者解决与网络零售经营者、消费者之间争议的机制及规则。　　（九）交易规则适用的规定，指交易规则适用对象、范围和期限的规定。　　（十）交易规则的修改规定，指交易规则变更、修改的程序和方式的规定。　　（十一）其他必要的交易规则或与规则相关的措施。　　**第七条** 网络零售第三方平台经营者制定或修改的交易规则，应当在网站主页面醒目位置公开征求意见，并应采取合理措施确保交易规则的利益相关方及时、充分知晓并表达意见，通过合理方式公开收到的意见及答复处理意见，征求意见的时间不得少于七日。　　**第八条** 符合下列情形之一的交易规则，可以不公开征求意见：　　（一）为符合法律法规要求修改的交易规则；　　（二）根据省级人民政府有关部门要求，为保护消费者权益，需紧急采取措施的交易规则。　　**第九条** 网络零售第三方平台经营者应在交易规则实施前七日在网站醒目位置予以公开，涉及商业秘密的除外。　　**第十条** 网络零售第三方平台经营者制定、修改、实施的交易规则对网络零售经营者和消费者有重大影响的，应制定合理过渡措施。　　**第十一条** 网络零售第三方平台经营者应当主动采取合理的方式保障利益相关方全面、方便地了解所实施的交易规则的内容，并提请其注意有关免除或限制网络零售第三方平台经营者或者利益相关方责任的内容。　　网络零售第三方平台经营者应当按照利益相关方的要求，在收到申请之日起七日内以合理方式对交易规则作出说明。　**第十二条** 网络零售第三方平台经营者应在交易规则实施七日内自行登录网络零售第三方平台交易规则备案系统，提交本规定所列交易规则、征求的公众意见及意见答复处理情况。　　**第十三条** 网络零售第三方平台经营者对其交易规则进行修改时，应按本规定第十二条的要求将修改部分重新备案。　**第十四条** 商务主管部门通过网络零售第三方平台交易规则备案系统免费提供已备案交易规则的公开查询服务。　　**第十五条** 任何单位和个人可通过网络零售第三方平台交易规则备案系统向网络零售第三方平台经营者所在地省级商务主管部门举报违反本规定的交易规则。　　省级商务主管部门确定举报内容属于本部门职责的应依法及时处理，不属于本部门职责的应及时移送相关部门。　　**第十六条** 国家鼓励行业组织开展行业规范自律，对已备案的交易规则提出意见，建立与网络零售第三方平台经营者的互动机制，推进第三方平台交易规则的标准化与规范化。　　**第十七条** 网络零售第三方平台经营者有下列情形之一的，根据举报，所在地省级商务主管部门可以向其提出行政指导建议书：　　（一）未按本规定第十一条提醒利益相关方注意有关免除或者限制责任内容的；　　（二）未按本规定备案交易规则的；　　（三）备案信息不完整、不真实的。　　**第十八条** 网络零售第三方平台经营者未按本规定制定、修改、实施交易规则的，由所在地省级商务主管部门依据职权责令限期改正，拒不改正的，处以警告，并向社会公布。　　**第十九条** 网络零售第三方平台经营者制定、修改、实施交易规则损害社会公共利益，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第二十条** 网络零售第三方平台经营者违反本规定第十二条、第十三条，未备案或提交虚假备案信息的，由所在地省级商务主管部门依据职权责令限期改正，拒不改正的，处以警告，并向社会公布。　　**第二十一条** 商务主管部门及其工作人员违反本规定，拒不履行职责，依法给予处分；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第二十二条** 本规定施行之日前已经实施的交易规则，网络零售第三方平台经营者应当在本规定施行之日起六十日内进行备案。　　**第二十三条** 本规定自2015年4月1日起施行。 |